

##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(현장클리닉) 운영계획 공고

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 「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(현장클리닉) 사업 운영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27일  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### 1. 사업 개요

#### 지원개요

-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에 대한 분야별 전문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

#### 지원규모

- (현장클리닉) 3천건 내외  
※ (전문상담) 제한 없음

#### 신청기간

- (현장클리닉)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
※ (전문상담) 연중 상시(휴일 제외)

#### 지원내용

- (현장클리닉)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, 분야별 클리닉 위원\*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(3일 내외)에 경영애로 해결  
\* 클리닉위원 : 경영기술지도사, 노무사, 변호사, 회계사, 기타 경력자 등 외부 위원

#### [ 참고 ]

- (전문상담) 분야별 전문 상담위원\*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인터넷, 전화, 방문 등을 통해 상담  
\* 상담위원 :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위원

□ 신청방법

- (전문상담) 지방청 방문, 전화, 온라인 신청\*
  - \*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(www.smes.go.kr/bizlink)
- (현장클리닉) 전문상담 이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추천(지방청)
  - \* 기업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서 수행

□ 지원대상

- (현장클리닉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지침 [별표 1]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 하되, [별표 2]를 제외한 업종
  -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)
- ※ (전문상담) 중소벤처기업, 소상공인, 자영업자 등 경영/기술상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관련자

□ 지원조건

- (현장클리닉) 기업당 1일 35만원 (정부지원금 80% + 기업부담금 20%)
  - \* 기업당 3일 이내 (특정 분야의 경우, 최대 7일까지 가능)
  - \* 부가세(10%)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 (부가세 신고시, 환급 가능)
  - \* 특별재난지역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, 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, 정부지원금 100% 지원 (단, 부가세 10% 별도 부담)
- ※ (전문상담) 별도 기업 부담금 없이 무료 상담 지원

**【 기업부담금 면제지역(특별재난지역, '26.1.5.) 】**

- (충북) 청주시(옥산면/오창읍)
- (충남) 부여군, 당진시, 서천군(판교면/비인면), 천안시, 서산시, 예산군, 공주시, 아산시, 청양군, 홍성군
- (세종) 전동면
- (전남) 무안군(무안읍/일로읍/현경면), 담양군, 광주 북구, 나주시, 함평군, 광주 광산구(어룡동, 삼도동), 광양시(다압면), 구례군(간전면/토지면), 화순군(이서면), 영광군(군남면/염산면), 신안군(지도읍/임자면/자은면/흑산면), 함평군(함평읍/대동면/나산면)
- (경북) 안동시, 의성군, 청송군, 영양군, 영덕군, 청도군
- (경남) 산청군, 하동군, 합천군, 진주시, 의령군, 하동군, 함양군, 밀양시(무안면), 거창군(남상면/신원면)
- (경기) 포천시, 가평군
- (울산) 울주군

\* 면제 기준 : 상담 신청일 당시 본점 소재지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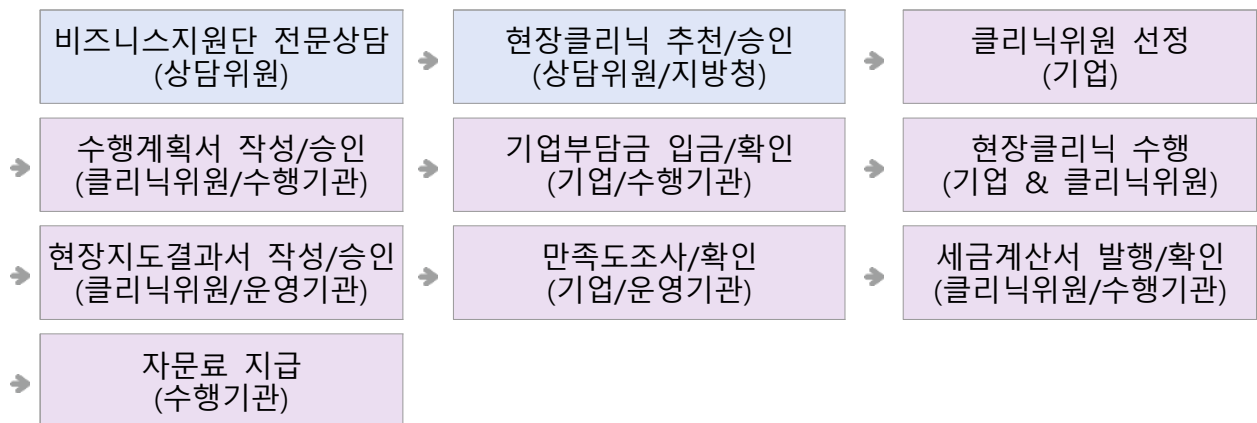
## 2. 지원분야 및 절차

□ 지원분야 : 12개 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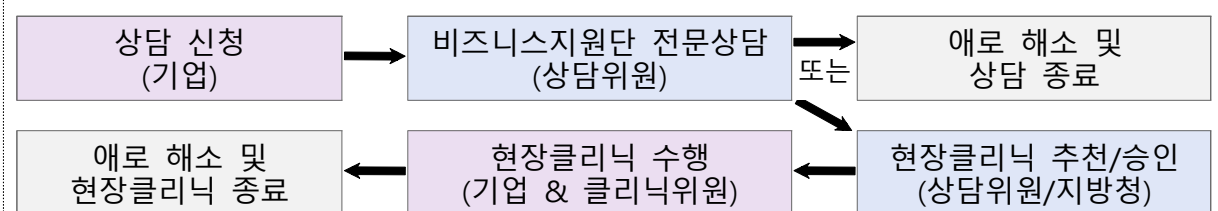
지원분야	지원 내용
창업	창업절차, 공장설립, 사업타당성 검토, 연구소 설립, 벤처등록, 사업 아이템 검토 등
금융·자금	정책자금, 환위험 관리, 자금 관리,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
회계·세무	세법 검토, 조세법령 검토, 재무분석, 회계관리, 회계감사 자문 등
기술	신제품/신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, 제조/공정기술 자문, 기술사업화 분석, R&D 자문 등
생산관리	기술지도, 품질개선, 원가관리, 작업/공정개선, 스마트공장 추진 등
수출입	원산지 증명, FTA 활용, 바이어 발굴, 수출계약 체결,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등
법무	법률자문, 상사분쟁, 인수합병, 국제분쟁 회생/퇴출 계약서 검토, 법률 분쟁 대응 방안 검토 등
인사·노무	조직개발, 목표관리, 직무분석,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
경영전략	경영전략 수립, 시장환경분석, 비즈니스모델(BM)수립, ESG컨설팅, 위기관리 대응전략 등
정보화	정보화전략 자문, 정보화기반 구축, 정보화교육, 정보화 융합기술, 정보시스템 도입 전략 등
마케팅·디자인	마케팅 전략, 판매전략, 홍보전략, 시제품 디자인, 패션/의류 디자인, 웹페이지 디자인 등
특허	지재권 관리, 해외출원, 기술보호, 특허/상표/디자인 출원 자문 등

□ 지원절차

### 【 현장클리닉 절차 】



### [ 참고 ] 전문상담 절차



### 3. 문의처

- (인터넷)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([www.smes.go.kr/bizlink](http://www.smes.go.kr/bizlink))
- (현장클리닉) 기관별 역할 및 관할 구역

구분	기관명	연락처	역할 및 관할 구역(클리닉)
운영기관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	055-751-9520, 070-4405-3585	운영 총괄
수행기관	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	02-6205-8122	경기, 부산, 울산, 대구·경북, 경남, 충남, 법무분야
	한국생산성본부	02-724-1243	서울, 인천, 대전·세종, 충북, 광주·전남, 전북, 강원
지원기관	(주)트리피	070-4405-3588	비즈니스지원단 사업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등

- (전문상담 및 방문)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

소속	전화번호	주소
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	02-2110-6351~4	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2
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	051-831-1357	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8
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	052-210-0031~2	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
대구·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	053-659-2270~3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-11
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	055-268-2546~8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
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	062-360-9137,9	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
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(전남동부사무소)	061-727-5713	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촌산단4로 13
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(제주시험연구센터)	064-723-2101~3	제주시 월평9길 2-21
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	031-201-6805~7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
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(경기북부사무소)	031-820-9040~1	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
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	032-450-1148~1150	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
대전·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	042-865-6181~3	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
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	041-415-0623,0687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
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	033-260-1625~6	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
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(강원영동사무소)	033-655-4147	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-11
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	043-230-5307~8	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
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	063-210-6436~8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

【별표 1】

## 현장클리닉 예비창업자 지원대상

### 현장클리닉 예비창업자 지원대상

- 예비창업자는 현장클리닉 신청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(개인, 법인)이 없는 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
  1. 공공·민간·대학 창업보육기관\*에 입주 중인 예비창업자
    - \* 공공·민간·대학 창업보육센터, 테크노파크, 창조경제혁신센터, 틱스타운, 메이커스페이스, 중장년기술창업센터,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션 공간, 기타 창업지원공간 등
  2.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\*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자
    - \* 창업선도대학, 창업사업화지원, 1인 창조기업, 시제품제작, 스마트벤처캠퍼스, 청년창업사관학교, 스마트창업터 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
  3. 최근 3년 내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창업지원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자 또는 이수 중인 자
  4.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출원 또는 보유 중인 자

【별표 2】

##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제외업종

###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제외업종

- 농업, 임업 및 어업(01110~03220)
-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(33402中), 도박 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 용품 제조업(33409中)
- 주류 및 담배 중개업(46102中), 귀금속 중개업(46107中), 앞담배 도매업(46209中), 주류(46331) 및 담배 도매업(46333)
- 사행성 오락 게임용품 도매업(46463), 귀금속 도매업(46492)
- 소매업(47111~47999)  
(단, 전자상거래(47911, 47912), 기타통신판매업(47919) 기업은 지원)
- 숙박 및 음식점업(55101~56229)
-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58211~ 58219中)
- 금융 및 보험업(64110~66209), 부동산업(68111~68224)
-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01~71109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01~71209)
- 경영 컨설팅(71531) 및 공공관계서비스업(71532), 수의업(73100),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(75330),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(75993),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(76390 中)
- 보건업(86101~86909)
- 오락장 운영업(91221~91229), 갬블링 및 베틱업(91241, 91242, 91249),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(91291~91299)
- 협회 및 단체(94110~94990)
- 기타 개인 서비스업(96111~96999)

\*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 코드 기준

\*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, 주 업종 대상